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첨단의료복합단지육성에관한
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「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(법률 제19959호, 2024. 1. 9. 공포, 7. 10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,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등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3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 중 “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(이하 “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”을 “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(이하 “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”라 한다)에서 필요하다고 협의한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 중 “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가 정하는”을 “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에서 협의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”를 “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4호 중 “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”을 “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협의한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호 중 “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”을 “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협의한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전단 중 “법 제28조제2항”을 “법 제28조제1항”으로, “국토교통부차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”을 “국토교통부차관, 식품의약품

안전처차장 및 질병관리청 차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과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인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18조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법 제28조제3항”을 “법 제28조제1항”으로, “위촉위원”을 “민간전문가인 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8조제3항”을 “법 제28조제1항”으로, “위촉위원”을 “민간전문가인 위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”를 대표하고, “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”를 “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”로 대표하고, “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재적위원”을 “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재적위원”으로, “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회의”를 “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회의”로 한다.

제1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(중전의 제9항)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심의하기”를 “협의하기”로, “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위촉위원”을 “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민간전문가인 위원”으로, “소위원회”를 “실무협의회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”를 “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첨단의료복합단지협

의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법 제28조제6항”을 “법 제28조제3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가 사전 심의”를 “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가 사전 협의”로 한다.

제18조제9항(중전의 제10항) 중 “법 제28조제2항”을 “법 제28조제1항”으로, “당연직”을 “공무원인”으로, “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”를 “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(중전의 제11항) 중 “제10항”을 “제9항”으로, “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”를 “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운영 및 실무협의회”로, “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의결을”을 “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를”로 한다.

제19조 본문 중 “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”를 “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제1호 중 “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”를 “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”를 “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)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 1. (생 략) 2. 법 제27조에 따른 <u>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</u> (이하 “ <u>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</u> ”라 한다)가 <u>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	제3조(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</u> (이하 “ <u>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</u> ”라 한다)에서 <u>필요하다고 협의한</u> ----- --
제5조(입지 선정의 세부기준) ① (생 략)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유치 및 정주(定住) 가능성,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(集積)·연계 정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 략) 2.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 정도: <u>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를 포함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구역 안에 우수 의료연구</u>	제5조(입지 선정의 세부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<u>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에서 협의한</u> -- -----

개발기관과 우수 의료기관의
수가 많을 것

3. ~ 6. (생략)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첨단
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에 관
한 세부기준의 구체적인 범위와
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첨단
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를
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제6조(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
또는 지정 해제 고시) ① 보건
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
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
가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
을 포함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
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위
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사항

② (생략)

제8조(종합계획의 포함사항) 법
제10조제4항제8호에서 “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사항을 말한다.

3. ~ 6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첨단
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---
-----.

제6조(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
또는 지정 해제 고시) ①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첨단의료복합단지협
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협의한
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종합계획의 포함사항) ---

-----.

1. · 2. (생략)

3.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8조(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법 제28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·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”이란 기획재정부차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, 법무부차관, 산업통상자원부차관, 국토교통부차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을 말한다.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.

<신설>

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협의한 --

제18조(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법 제28조제1항-----

----- 국토교통부차관,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및 질병관리청 차장-----
-----.
-----.

②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과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인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법 제28조제1항----- 민간전문가인 위원-----
-----.

④ ----- 법 제28조제1항-----
--- 민간전문가인 위원-----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④ 위원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⑤ (생략)

⑥ 위원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회의 안건 등을 회의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가 개최되기 전일까지 위원들에게 알릴 수 있다.

⑧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첨단의료복합단지협
의회를 대표하고, 첨단의료복합
단지협의회-----
--.

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
⑦ ----- 첨단의료복합단지협
의회의 재적위원 -----

--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
회의-----
--.

<삭 제>

<삭 제>

의결한다.

⑨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위촉위원 3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

1.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무국(이하 “사무국”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

2. (생략)

3.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가 사전 심의를 요청한 사항

⑩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차관·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도 필요한 경우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

⑧ -----

협의하기 -----

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민간전문가인 위원 -----

----- 실무협의회-----

----- . ----- 실무협의회

에서 협의한 사항은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-----.

1. 법 제28조제3항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3.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가 사전 협의-----

⑨ 법 제28조제1항----- 공무원인 -----

-----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-----

-----.

⑩ ----- 제9항-----

----- 첨단의료복합단지협회의 운영 및 실무협의

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
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의
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9조(수당) 첨단의료복합단지위
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민간전문
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
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
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
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
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
다.

제20조(사무국의 업무 등) ① 사
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
다.

1.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
상정되는 안전에 대한 입안·
기획·검토·평가·점검 등에
관한 업무

2. ~ 6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
사항 외에 사무국의 구성 및 운
영에 필요한 사항은 첨단의료복
합단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첨
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위원
장이 정한다.

회-----
첨단의료복합단지협회의 협
의를-----.

제19조(수당) 첨단의료복합단지협
의회-----

-----.

--.

제20조(사무국의 업무 등) ① ---

--.

1. 첨단의료복합단지협회의---

2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첨단의료복
합단지협회의의 협의를 거쳐 첨
단의료복합단지협회의-----
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911